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나690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나6906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24605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변론 종결 2024. 9. 27.

판결 선고 2024. 11. 29.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2460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16. 접수 제2985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대체로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이고,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기만

판사김익환

판사임수희

별지